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재난총괄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불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4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연구사 2명, 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32명, 7급 27명, 9급 2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산림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림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장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산림재난 정책의 총괄·조정

23.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총괄

2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2조의2 중 “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본문 중 “센터에”를 “품종관리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의4 중 “센터”를 “품종관리센터”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서부지방산림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를 “서부지방산림청장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관”로 한다.

제6장의2(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제27조의2(직무)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3(센터의 장)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중 “23명”을 “24명”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10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 6급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청”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조직
은”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직”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23”을 “327”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6”을 “310”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총 계	1,149
일반직 계	1,145
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1,138
전문경력관	3
소방공무원 계	4
소방위 이하	4

[별표 3의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의2제1항 관련)

1.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산림보호국 1개 정책관등	0명
나. 산림보호국 산림재난총괄과	3명

2. 산림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가. 권역별 산불대응 업무(권역별 산불방지센터)	24명
나. 산불진화 업무(지방산림청)	86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보호국) ①·② (생략) ③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제11조(산림보호국) ①·② (현재와 같음) ③ ----- -----.
<u><신 설></u>	1. ~ 21. (현재와 같음)
<u><신 설></u>	<u>22. 산림재난 정책의 총괄·조정</u>
<u><신 설></u>	<u>23.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총괄</u>
	<u>2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립품종관리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u>)는 산립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심판, 산립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산립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꺾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의2(직무) ----- ----- <u>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u> ----- ----- ----- ----- ----- ----- ----- ----- ----- ----- -----.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u>품종관리센터</u> 에 -----

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
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
관(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
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지방산림청장) ①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하부조직) -----

--- 품종관리센터-----

제25조(지방산립청장) ①-----

----- 서부지방산림청장과

----- .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

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제27조의2(직무) 권역별 산불방지
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
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의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3(센터의 장) ① 산불방
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
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국
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4명-----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3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립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 12명-----

-----.

③ 산립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 6급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립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4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

산립청과 그 소속기관-----
----- 조직 및 정원은 -----.

② ----- 조직

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및 정원-----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323</u>	<u>327</u>	+4
·	·	·	
·	·	·	
일반직 계	<u>317</u>	<u>321</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6</u>	<u>310</u>	+4
·	·	·	
·	·	·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30</u>	<u>1,149</u>	+119
일반직 계	<u>1,030</u>	<u>1,145</u>	+11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23</u>	<u>1,138</u>	+115
·	·	·	
소방공무원 계	<신 설>	4	+4
소방위 이하	<신 설>	4	+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4